

1. 개정이유

홈페이지,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활용한 연계신청, 급여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, 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의 취지에 따라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 및 3조 일부 개정)

- 연계신청서, 지급청구서 등의 본인서명확인서 내용에 관한 서식 변경(안 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 서식)

나. 전자문서 업무 처리 규정 신설(안 제6조)

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계 신청·급여 청구·사망 신고·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인감증명서 1부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가목3), 같은 조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“인감증명서 1부”를 각각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)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법·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·청구·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,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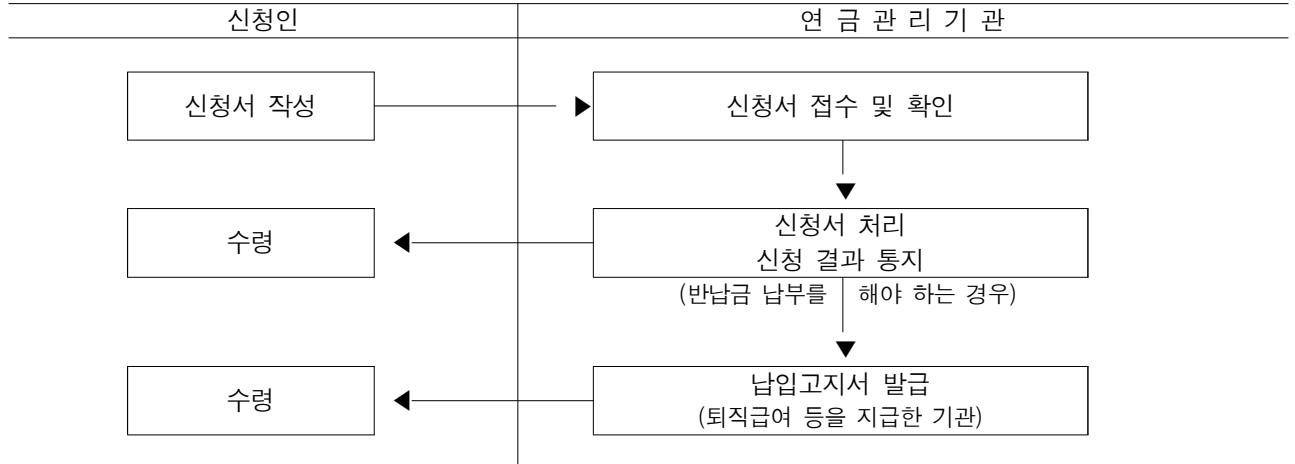
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제2호 중 “인감증명서 1부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”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뒤쪽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"성명"란 및 "주민등록번호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.
2. "주소"란에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.
3. "가입내용"란에는 본인이 연계 신청을 하려는 연금의 가입·재직(복무) 연월수를 적으십시오.
 - 재직(복무)기간은 반드시 전체 재직(복무)기간으로 해야 하며, 일부 기간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연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- 연계하려는 가입·재직(복무)기간이 같은 연금관리기관에 2회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가입내용을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4. "퇴직급여 등 수령 여부"란에는 직역에서의 퇴직 시 퇴직급여 등 수령 여부를 표시하십시오.
 - 직역에서의 퇴직 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「군인연금법」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(연금인 급여는 제외)를 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5. "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일"란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받은 후 국민연금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날짜를 적으십시오.
6. "반납금 납부방법" 중에서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(다만, 연계퇴직연금 수급 연령 전까지는 완납할 수 있도록 60회 이내에서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).
 - 둘 이상의 직역연금에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해당 직역 종류, 재직기간, 반납금 납부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7. "대리인"란은 신청인의 해외 체류,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.
 -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같고,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같아야 합니다.
 - 기관장 확인은 신청인이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별지 제2호서식 제2쪽 제3호 중 “인감증명서 1부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”로 하고, 같은 제2쪽 기호(-) 중 “같아야”를 “같고,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같아야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4호 중 “인감증명서 1부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”로 하고, 같은 뒤쪽 기호(-) 중 “같아야”를 “같고,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같아야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4호 중 “인감증명서 1부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”로 하고, 같은 뒤쪽 기호(-) 중 “같아야”를 “같고,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같아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타) 생략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연계의 신청 등) ① 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(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2조(연계의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신청인의 <u>인감증명서 1부</u>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	2. ----- <u>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</u>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(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)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	제3조(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) ----- ----- -----.
1.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: 별지 제2호서식의 연계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	1. ----- ----- ----- -----

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공통서류

1) · 2) (생략)

3)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(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

나. · 다. (생략)

2.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: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~ 다. (생략)

라.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(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

마. ~ 사. (생략)

3.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: 별지 제4호서식의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~ 다. (생략)

라.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(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청

-----.

가. -----

1) · 2) (현행과 같음)

3) -----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-----

나. · 다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.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-----

마. ~ 사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.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-----

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 마.·바.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 마.·바. (현행과 같음) <u>제6조(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)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법·령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·청구·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,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한다.</u>
--	---